

직제규정

1996.03.01. 제정	1997.01.11. 일부개정	1997.12.10. 일부개정	1999.11.01. 일부개정
2001.02.01. 일부개정	2022.02.23. 일부개정	2003.04.01. 일부개정	2003.09.01. 일부개정
2004.03.01. 일부개정	2004.09.01. 일부개정	2006.02.07. 일부개정	2006.03.01. 일부개정
2006.06.20. 일부개정	2006.12.01. 일부개정	2007.01.01. 일부개정	2007.03.01. 일부개정
2007.06.20. 일부개정	2008.03.01. 일부개정	2009.01.01. 일부개정	2010.03.01. 일부개정
2011.04.18. 일부개정	2011.07.25. 일부개정	2011.10.01. 일부개정	2011.11.01. 일부개정
2012.01.30. 일부개정	2012.03.01. 일부개정	2012.05.18. 일부개정	2012.08.01. 일부개정
2013.01.01. 일부개정	2013.03.01. 일부개정	2013.07.22. 일부개정	2013.10.28. 일부개정
2014.03.01. 일부개정	2014.04.09. 일부개정	2014.08.01. 일부개정	2015.01.12. 일부개정
2015.02.01. 일부개정	2015.03.01. 일부개정	2016.02.01. 일부개정	2016.05.01. 일부개정
2016.06.24. 일부개정	2016.10.01. 일부개정	2016.10.10. 일부개정	2016.10.27. 일부개정
2016.11.11. 일부개정	2017.03.01. 일부개정	2017.05.15. 일부개정	2017.10.01. 일부개정
2018.03.12.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2018.10.01. 일부개정	2018.11.08. 일부개정
2019.03.01. 일부개정	2019.04.01. 일부개정	2019.05.01. 일부개정	2019.06.01. 일부개정
2019.10.01. 일부개정	2019.12.01. 일부개정	2020.03.01. 일부개정	2020.04.01. 일부개정
2020.07.01. 일부개정	2020.10.01. 일부개정	2021.03.01. 일부개정	2021.06.01. 일부개정
2021.07.01. 일부개정	2021.10.01. 일부개정	2022.01.01. 일부개정	2022.04.01. 일부개정
2022.10.01. 일부개정	2023.03.01. 일부개정	2023.04.01. 일부개정	2023.09.01. 일부개정
2023.09.01. 일부개정	2023.09.24. 일부개정	2024.03.01. 일부개정	2024.04.01. 일부개정
2024.05.23. 일부개정	2024.10.01. 일부개정	2025.03.01. 일부개정	2025.05.01. 일부개정
2025.06.01. 일부개정	2025.07.01. 일부개정	2025.12.01. 일부개정	2026.01.01. 일부개정

<미래전략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장 제2절 및 동명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3장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대학교의 기본 행정조직과 구성원에 관한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

제2조(적용범위) 대학교의 직제는 법령, 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3.1.)

제3조(조직) ① 대학교에는 총장 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개정 2007.1.1, 2008.3.1, 2011.4.18, 2011.7.25, 2011.10.1, 2011.11.1, 2012.1.30, 2012.3.1, 2012.4.1, 2012.5.18, 2012.8.1, 2013.1.1, 2013.3.1., 2014.3.1., 2025.5.1.)

1. 직속기구: 총장을 보좌하고 직속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를 둔다.
2. 대학본부: 교무 및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본부를 둔다.
3.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4. 대학: 교무 및 학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학을 둔다.
 5. 대학원: 대학원의 교무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수익사업 등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다.
 6.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대학교 행정 및 교육기능을 지원하고 수익사업 등을 창출하기 위하여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7. 기타기관: 기타 대학교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이 규정과 관련된 상세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3.1., 2011.4.18., 2011.7.25., 2011.10.1., 2011.11.1., 2012.1.30., 2012.3.1., 2012.4.1., 2012.5.18., 2012.8.1., 2013.1.1., 2013.3.1., 2013.7.22., 2013.10.28., 2014.3.1., 2014.4.9., 2014.8.1., 2015.1.12., 2015.2.1., 2015.3.1., 2015.9.1., 2015.12.1., 2016.5.1., 2016.6.24., 2016.10.1., 2016.10.10., 2016.10.27., 2016.11.11., 2017.3.1., 2017.5.15., 2017.10.1., 2018.3.12., 2018.7.1., 2018.10.1., 2018.11.8., 2019.3.1., 2019.4.1., 2019.5.1., 2019.6.1., 2019.10.1., 2019.12.1., 2020.3.1., 2020.4.1., 2020.7.1., 2020.10.1., 2021.3.1., 2021.6.1., 2021.7.1., 2021.10.1., 2022.1.1., 2022.4.1., 2022.10.1., 2023.3.1., 2023.4.1., 2023.9.1., 2024.3.1., 2024.4.1., 2024.5.23., 2024.10.1., 2025.3.1., 2025.5.1., 2025.6.1., 2025.7.1., 2025.12.1., **2026.1.1.**)

제2장 총장 · 부총장

제4조(총장) ① 총장은 대학교의 대표자로서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사 및 학교 행정 운영 전반을 정리한다. (**개정** 2014.3.1.)

② 총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1., 2011.4.18., 2012.8.1., 2014.8.1., 2018.7.1., 2018.10.1., 2019.10.1., 2021.6.1., 2022.4.1., 2023.9.1., 2025.5.1., 2025.6.1., **2026.1.1.**)

제4조의2(부총장) ① 대학교에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로 겸보하고, 대외협력부총장은 교수로 겸보하거나 교원 이외의 사람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4.3.1., 2018.7.1., 2018.10.1., 2021.6.1., 2023.9.1., 2023.9.24.)

② 삭제 <2018.7.1.>

③ 삭제 <2018.7.1.>

④ 부총장은 **대학본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기관, 기타기관**을 총괄한다. (**개정** 2018.7.1., 2018.10.1., 2021.6.1., 2023.9.1., 2025.5.1., **2026.1.1.**)

⑤ 삭제 <2023.9.1.>

[본조신설 2011.3.1.]

제4조의3 삭제 <2018.10.1.>

제4조의4 삭제 <2018.10.1.>

제3장 교직원

- 제5조(교원)** ①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기간제교원, 조교수(외국인),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의 전임교원을 둔다. (개정 2011.3.1., 2012.8.1., 2014.3.1., 2023.9.1.)
- ② 제1항의 교원 이외에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교환교수, 석좌교수, 강사 등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1., 2014.8.1., 2019.10.1.)
- ③ 교원의 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교원의 총원 계획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2.8.1.)

- 제6조(직원)** ① 대학교에는 교원 외에 직원을 두며,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을 둔다. (개정 2013.3.1., 2014.3.1.)
- ② 직원의 정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전항의 직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계약직원과 고용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조교) 대학교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3.1.)

제4장 직속기구

- 제8조(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국제교류본부, 캠퍼스공간혁신본부, 비서실, 법무감사실, 인권센터, 창업지원단,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개정 2007.1.1., 2008.3.1., 2011.4.18., 2011.11.1., 2012.4.1., 2012.8.1., 2013.3.1., 2014.8.1., 2018.7.1., 2019.10.1., 2020.4.1., 2021.6.1., 2022.1.1., 2022.4.1., 2023.9.1., 2025.5.1., 2025.6.1., 2026.1.1.)
- ② 국제교류본부장, 캠퍼스공간혁신본부장, 비서실장, 법무감사실장, 인권센터장, 창업지원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3.1., 2011.4.18., 2011.11.1., 2012.4.1., 2012.8.1., 2014.8.1., 2017.3.1., 2018.7.1., 2019.10.1., 2020.4.1., 2021.6.1., 2022.1.1., 2022.4.1., 2023.9.1., 2025.5.1., 2025.6.1., 2026.1.1.)
- ③ 삭제 <2012.8.1.>

제8조의2 삭제 <2012.8.1.>

제8조의3 삭제 <2011.11.1.>

제8조의4 삭제 <2012.8.1.>

제8조의5 삭제 <2012.8.1.>

제8조의6 삭제 <2014.8.1.>

제8조의7 삭제 <2018.7.1.>

제8조의8 삭제 <2018.7.1.>

제8조의9 삭제 <2022.4.1.>

제8조의10 삭제 <2019.10.1.>

제8조의11(국제교류본부) ① 국제교류본부에 국제교류처를 두고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팀, 글로벌교육센터, ~~글로벌취·창업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6.1.1.)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1.)

[본조 신설 2025.5.1.]

제8조의12 삭제 <2026.1.1.>

제8조의13(캠퍼스공간혁신본부) 캠퍼스공간혁신본부에는 캠퍼스공간혁신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5.6.1.]

제9조 삭제 <2026.1.1.>

제9조의2 삭제 <2026.1.1.>

제9조의3 삭제 <2022.4.1.>

제9조의4 삭제 <2026.1.1.>

제9조의5 삭제 <2022.4.1.>

제9조의6 삭제 <2023.9.1.>

제9조의7 삭제 <2023.9.1.>

제10조 삭제 <2008.3.1.>

제11조 삭제 <2008.3.1.>

제5장 대학본부

- 제12조(대학본부)** ① 대학본부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8.3.1., 2011.4.18., 2011.11.1., 2012.8.1., 2014.3.1., 2018.7.1., 2018.10.1., 2019.10.1., 2021.6.1., 2022.4.1., 2023.9.1., 2025.5.1.)
- ②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8.1., 2014.8.1., 2022.4.1., 2022.10.1., 2025.5.1.)
- ③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부처장은 소관 부서의 사업단에 관한 업무는 관장하지 않는다. (개정 2007.3.1, 2011.10.1, 2011.11.1., 2012.8.1. 2021.6.1)

제12조의2(교무처) ① 삭제 <2026.1.1.>

- ② 교무처에는 교무팀, 교육혁신원을 두고, 교육혁신원에는 학사관리팀,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센터장 및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1., 2018.11.8., 2019.4.1., 2020.3.1., 2021.6.1., 2021.10.1., 2024.3.1., 2024.10.1., 2025.3.1., 2025.5.1., 2026.1.1.)
- ③ 삭제 <2021.6.1>
- ④ 삭제 <2021.6.1>
- ⑤ 삭제 <2019.4.1.>
- ⑥ 삭제 <2022.4.1.>

제12조의3(기획처) ① 삭제 <2026.1.1.>

- ② 기획처에는 미래전략팀, 대학혁신단, RISE사업단을 두고, 대학혁신단에는 재정혁신팀을 두며, RISE사업단에는 RISE사업팀, Co-Op혁신교육센터, 창업지원센터, 지산학협업센터를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8., 2019.4.1., 2019.6.1., 2019.10.1., 2020.3.1., 2020.7.1., 2020.10.1., 2021.6.1., 2021.7.1., 2022.4.1., 2022.10.1., 2023.9.1., 2024.3.1., 2024.5.23., 2025.3.1., 2025.5.1. 2025.12.1., 2026.1.1.)
- ③ 삭제 <2021.6.1.>
- ④ 삭제 <2020.3.1.>
- ⑤ 삭제 <2020.3.1.>
- ⑥ 삭제 <2019.10.1.>
- ⑦ 삭제 <2019.6.1.>
- ⑧ 삭제 <2019.6.1.>
- ⑨ 삭제 <2024.5.23.>
- ⑩ 삭제 <2024.5.23.>

⑪ 대학혁신단과 RISE사업단에는 각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1.1.)

[본조 신설 2018.7.1.]

[제4조의4에서 이동 2018.10.1.]

제13조 삭제 <2018.7.1.>

제14조(학생처) ① 삭제 <2026.1.1.>

② 학생처에는 학생·장학봉사팀,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단을 두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단에는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를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 2011.4.18., 2011.7.25., 2011.11.1., 2012.8.1., 2013.1.1., 2013.3.1., 2014.3.1., 2016.6.24., 2017.3.1., 2017.10.1., 2018.7.1., 2022.4.1., 2024.4.1., 2025.5.1., 2026.1.1.)

③ 삭제 <2011.4.18.>

④ 삭제 <2012.8.1.>

[본조 제목 개정 2012.8.1]

제15조 삭제 <2011.4.18.>

제15조의2 삭제 <2018.7.1.>

제16조(입학홍보처) ① 삭제 <2026.1.1.>

② 입학홍보처에는 입학팀, 홍보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1, 2011.4.18, 2011.11.1, 2012.8.1, 2014.3.1., 2019.10.1., 2022.4.1., 2023.9.1., 2026.1.1.)

[본조 제목 개정 2012.8.1., 2014.3.1.,2022.4.1.]

제17조(사무처) ① 삭제 <2026.1.1.>

② 사무처에는 총무팀, 재무팀, 시설안전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1, 2009.1.1, 2011.4.18., 2012.8.1., 2017.3.1., 2022.4.1., 2023.9.1., 2024.3.1., 2025.5.1., 2025.7.1., 2026.1.1.)

③ 삭제 <2012.8.1.>

[본조 제목 개정 2012.8.1]

제17조의2 삭제 <2014.3.1.>

제17조의3 삭제 <2019.10.1.>

제17조의4 삭제 <2025.5.1.>

제17조의5 삭제 <2025.5.1.>

제18조(대학) ① 대학에는 보건복지교육대학, 반려동물대학, 뷰티예술대학, ICT융합대학, 건축·디자인대학, 경영대학, 미디어대학, Do-ing대학, 미래융합대학, Busan International College, 학부교양대학을 두며, 학과 및 전공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 2012.3.1., 2012.8.1.2015.3.1., 2017.3.1., 2019.3.1., 2019.6.1., 2021.3.1., 2021.6.1., 2023.3.1., 2024.3.1., 2024.5.23.)

② 각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단, Busan International College에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8.1., 2014.8.1., 2015.03.01., 2021.3.1., 2021.6.1., 2024.4.1. 2024.5.23.)

③ 삭제 <2026.1.1.>

④ 각 대학에는 교학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0., 2012.8.1., 2015.3.1., 2021.3.1., 2021.6.1, 2026.1.1.)

⑤ 삭제 <2023.9.1.>

제18조의2 삭제 <2020.3.1.>

제18조의3(공학교육혁신센터) ① ICT융합대학에는 공학교육인증,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창작동아리등 학생의 비교과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다. (개정 2012.8.1., 2014.3.1., 2020.3.1., 2024.3.1., 2026.1.1.)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8, 2014.3.1., 2024.3.1.)

[본조 신설 2012.1.30.]

[본조 제목 개정 2014.3.1.]

제18조의4 삭제 <2017.3.1.>

제18조의5 삭제 <2014.3.1.>

제18조의6 삭제<2020.3.1.>

제18조의7 삭제 <2017.3.1.>

제18조의8 삭제 <2016.11.11.>

제18조의9 삭제 <2019.6.1.>

제18조의10 삭제 <2022.4.1.>

제18조의11 삭제 <2026.1.1.>

제18조의12 삭제 <2023.4.1.>

제18조의13 삭제<2020.3.1.>

제18조의14 삭제 <2022.4.1.>

제18조의15 삭제 <2022.4.1.>

제18조의16 삭제 <2020.3.1.>

제18조의17 삭제 <2023.9.1.>

제18조의18 삭제 <2023.9.1.>

제18조의19 <삭제> (2021.7.1.)

제18조의20 삭제 <2022.4.1.>

제18조의21 삭제 <2025.5.1.>

제18조의22 삭제 <2024.10.1.>

제18조의23(RISE빅서스센터) ① 미래융합대학에는 RISE사업의 지산학 공유협력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RISE빅서스센터를 둔다. (개정 2026.1.1.)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5.6.1.]

제18조의24(교양교육연구센터) ① 학부교양대학에는 교양교육 전반의 연구, 개발 및 질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6.1.1.]

제7장 대학원

제19조(대학원) ① 대학교에는 대학원과 복지산업대학원, 국제대학원을 두며, 각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의 편성은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 2014.3.1., 2025.3.1., 2026.1.1.)

② 각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2.8.1.)

③ 각 대학원장은 그 대학원의 교무행정, 학사운영, 학생복지 및 지도, 입학업무 등에 관한 제

반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6.1.1.)

④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원, 복지산업대학원에는 대학원행정팀을 두고, 국제대학원에는 국제대학원행정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8.1., 2014.3.1., 2025.3.1., 2026.1.1.)

제8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20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는 중앙도서관, 정보전산원, 동명생활관, 평생교육원, 신문방송국, 동명문화연구원을 두며, 각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1., 2011.4.18., 2011.11.1., 2012.8.1., 2013.3.1., 2013.10.28., 2014.3.1., 2014.8.1., 2018.7.1., 2020.7.1. 2021.6.1., 2021.10.1., 2022.4.1., 2023.4.1., 2026.1.1.)

② 삭제 <2011.11.1.>

③ 삭제 <2011.4.18.>

④ 삭제 <2009.1.1.>

⑤ 삭제 <2009.1.1.>

⑥ 삭제 <2011.4.18.>

⑦ 삭제 <2011.11.1.>

⑧ 삭제 <2011.4.18.>

⑨ 삭제 <2011.11.1.>

⑩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11.1.) (개정 2012.8.1., 2022.4.1.)

⑩의2 삭제(2021.6.1.)

⑪ 중앙도서관에는 문헌정보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11.1.)(개정 2012.8.1.)

⑫ 정보전산원에는 정보개발·운영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2.8.1.) (개정 2014.3.1., 2017.3.1., 2023.9.1., 2026.1.1.)

⑬ 삭제 <2014.3.1.>

⑭ 삭제 <2014.8.1.>

⑮ 동명생활관에는 생활관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8.7.1.)

⑯ 삭제 <2026.1.1.>

⑰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1.1.)

[본조 제목 개정 2022.4.1.]

제9장 삭제 <2022.4.1.>

제21조 삭제 <2022.4.1.>

제22조 삭제 <2007.1.1.>

제23조 삭제 <2008.3.1.>

제24조 삭제 <2008.3.1.>

제25조 삭제 <2008.3.1.>

제10장 기타기관

제26조 삭제 <2012.8.1.>

제26조의2(기타기관) ① 기타기관에는 예비군연대, 남구노인복지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둔다. (개정 2013.3.1., 2018.3.12., 2021.3.1., 2022.4.1., 2024.2.1.)

② 예비군연대, 남구노인복지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12., 2021.3.1., 2022.4.1., 2024.2.1.)

③ 삭제 <2013.3.1.>

[조항신설 2008.3.1.]

제11장 산학협력단

제26조의3(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 2014.8.1., 2018.10.1., 2019.10.1., 2025.6.1., **2026.1.1.**)

②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연구지원팀, 감사팀, 기술경영지원센터, 동명웰데이케어센터를 두며,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1., 2019.10.1., 2019.12.1., 2020.10.1., 2021.3.1., 2022.4.1., 2023.9.1., 2025.6.1., **2026.1.1.**)

③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1., 2025.6.1., **2026.1.1.**)

④ 삭제 <2025.6.1.>

⑤ 삭제 <2025.6.1.>

⑥ 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조신설 2012.8.1.]

[장신설 2019.10.1.]

[제17조의3에서 이동 2019.10.1.]

[제8조의10에서 이동 2019.10.1.]

제12장 기타

제27조 삭제 <2014.3.1.>

제13장 위원회

제28조(위원회) ① 대학교 운영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3.1.)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29조(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제30조(결재권 위임) 책임행정체제 확립과 행정능률을 도모하며,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2.7.]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능직 정원조정(정관개정, 2004.2.21)에 따른 전직임용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정원에 의한 기능직의 정원을 현원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개정규정 시행당시 다른규정에서 변경전 직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본 개정직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및 제7항의 개정(신설) 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항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2항 “사고 또는 쫓위”, 제5조 제3항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하며 제5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본 대학교 각종 규정, 세칙, 지침의 직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기획전략처(장)는 기획처(장)로 변경한다.
2. 시설기획팀(장)은 관재팀(장)으로 변경한다.
3. 홍보실(장)은 대외홍보처(장)로 변경한다.
4. 교학지원처(장)는 교무처(장)로 변경한다.
5. 교학지원팀(장) 교무과(장)는 교무팀(장)으로 변경한다.
6. 교학지원팀(장) 학사관리과(장)는 학사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7. 교학지원팀(장) 교직과(장)는 교직운영센터(장)로 변경한다.
8. 공학교육혁신센터(장)는 공학교육혁신실(장)로 변경한다.
9. 교육개발과(장)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10. 학생지원처(장)는 학생처(장)로 변경한다.
11. 학생복지과(장)는 학생복지팀(장)으로 변경한다.
12. 학생지원과(장)는 장학팀(장)으로 변경한다.
13. 학생생활연구소(장)는 학생상담서비스센터(장)로 변경한다.
14. 입학지원처(장)는 입학처(장)로 변경한다.
15. 입학지원팀(장) 입학과(장)는 입학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16. 총무처(장)는 사무처(장)로 변경한다.
17. 총무팀(장) 총무과(장)는 총무팀(장)으로 변경한다.
18. 총무팀(장) 경리과(장)는 재무팀(장)으로 변경한다.
19. 관리팀(장) 자산관리과(장)는 관재팀(장)으로 변경한다.
20. 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는 관재팀(장)으로 변경한다.
21. 대외협력처(장)는 대외홍보처(장)로 변경한다.
22. 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육프로젝트과(장)는 국제교류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23. 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프로젝트(과)는 국제교류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24. 대외협력팀(장) 국제교류지원과(장)는 국제교류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25. 유학생지원센터(장) 유학생지원과(장)는 유학생지원센터(장)로 변경한다.
26. 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과(장)는 대외홍보협력팀(장)으로 변경한다.
27. 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관리과(장)는 산학협력팀(장)으로 변경한다.
28. 산학협력팀(장) 연구지원과(장)는 연구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29. 학술정보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으로 변경한다.
30. 문헌정보과(장)는 문헌정보팀(장)으로 변경한다.
31. 정보전산센터(장)는 정보전산원(장)으로 변경한다.
32. 정보운영과(장)는 정보운영팀(장)으로 변경한다.
33. 정보기획과(장)는 S/W개발팀(장)으로 변경한다.
34. 동명생활관(장) 행정과(장)는 동명생활관(장) 생활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35. 계약학점관리과(장)는 평생교육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36. 산학협력교육과(장)는 평생교육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37. 대학원, 대학, 학부의 교학과(장)는 교학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정관 개정일인 2012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6 제2항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대학교 각종 규정, 세칙, 지침의 직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대학원교학지원팀(장) 및 복지산업대학원교학지원팀(장)은 대학원행정팀(장)으로 변경한다.
2. 공학교육혁신실(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장)로 변경한다.
3. 경영학교육혁신실(장)은 경영학교육혁신센터(장)로 변경한다.
4. 교직원운영센터(장)은 교직원운영팀(장)으로 변경한다.
5. 교수학습지원실(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로 변경한다.
6. 학생복지팀(장) 및 장학팀(장)은 장학·복지팀(장)으로 변경한다.
7. 생활지원팀(장)은 생활관지원팀(장)으로 변경한다.
8. 사회봉사실(장)은 사회봉사팀(장)으로 변경한다.
9. 입학처(장)은 입학·홍보처(장)로 변경한다.
10. 대외홍보협력팀(장)은 대외홍보팀(장)으로 변경한다.
11. 경영기획팀(장) 및 예산기획팀(장)은 경영기획팀(장)으로 변경한다.
12. S/W개발팀(장) 및 정보운영팀(장)은 정보전산팀(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개정 내용 중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단 직제 폐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제 신설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대학교 각종 규정, 세칙, 지침의 직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대학교육혁신팀(장)은 교육혁신성과관리팀(장)으로 변경한다.
2. 경영기획팀(장)은 경영예산팀(장)으로 변경한다.
3. 미래전략팀(장)은 평가감사팀(장)으로 변경한다.
4. 관재팀(장)은 시설관리팀(장)으로 변경한다.
5. 정보전산팀(장)은 정보개발팀(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4조의2는 정관 개정일인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대학교 각종 규정, 세칙, 지침의 직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교육혁신본부부총장은 교육혁신부총장으로 변경한다.
2. 전략기획본부부총장은 전략기획부총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대학교 각종 규정, 세칙, 지침의 직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교육혁신실(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변경한다.
2. 교육혁신확산센터(장)은 교육과정혁신센터(장)으로 변경한다.
3. 비교과관리센터(장)은 학생역량관리센터(장)으로 변경한다.
4. 대학IR실(장)은 대학IR센터(장)으로 변경한다.
5.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은 대학혁신팀(장)으로 변경한다.
6. PRIME사업단(장)은 PRIME+ 센터(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내용 중 제12조의3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직제 폐지 및 제26조의2의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제 신설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내용 중 제12조의3 제2항의 'SW중심대학사업단' 및 제9항 내지 제10항의 'SW행정지원팀' 직제 폐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3 제1항,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5

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6.1.1.)

동명대학교 조직도(제3조제2항 관련)

